

제23대 국교련 제5차 회장단회의 결과

- 일 시 : 2020년 10월 23일(금) 15시-
- 장 소 :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 참석자 : 전체교 22/41개교

연번	학교	직위	참석자
1	국교련	상임회장	오홍식
		사무총장	김경호
2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교수회장	박철원
3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한수
		부회장	정미경
		부회장	유원근
		부회장	남우동
4	경상대학교 교수회	회장	백승철
5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명숙
6	공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서정호
7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호
8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노창균
		사무처장	장선영
9	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두진
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신윤희
11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조철원
		대외협력이사	임정목
12	순천대학교 교수회	부의장	오시영
13	안동대학교 교수회	회장	안상준
14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창헌
		부회장	소은선
15	전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도형
16	제주대학교 교수회	정책처장	제갈윤석
17	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류병관
18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종성
19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성덕
20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	부의장	조순이
21	한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오호택
22	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철원
		부회장	한철희
23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구
		부회장	이상일
24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권오현
		정책위원	남중웅

I. 제23대 국교련 제5차 회장단 회의 회의록 보고

- 상임회장 인사말 : 감사의 말씀 전달

- 강원대학교 김원형 총장 축하

<간략 내용> 올해 다섯 번 째 국공립대 회의가 있다고 하여 직접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여 참석하게 된 배경의 말씀과 함께 국공립대학에서는 대학의 재정문제,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의 의제들을 다루어 나가고 있기에 지금까지 국교련의 노고를 깊이 알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 전달. 이번 회의를 통해서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오늘 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전달하였음

- 성원 보고 : 전체 41교 중에서 22개교가 출석, 5차 회의 성원 보고

∴ 질의 : 회의록 작성 과정 및 작성기한, 회의록 참석자 명단 오류

- ▷ 회의록 작성의 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되도록 빨리 작성토록 할 것
- ▷ 회의록 참석자 명단 오류 정정 및 재발 방지/ 성원에는 문제가 없었고 참석 학교수에는 오류가 없었음. 안동대 오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 지난 회의에 발표한 중요한 쟁점 및 일부 사항들이 생략되거나 압축되었음

- ▷ 정치적인 쟁점 사항, 입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수록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의 사항 또는 문제가 될 만한 쟁점들은 개별적으로 국교련을 통해 답변토록 하겠음. 전자 자료집에 수록되었던 사항은 회의록에는 기록하지 않고, 전하 회의 자료집에 들어있으니 참고하시도록 전달하였음

∴ 질의 : 회의록 회람 및 검토의 과정 필요

- ▷ 회의록 오류에 관한 사항, 이전과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의록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라 별도로 공동회장단이 검토하는 절차는 진행된 바 없음.

II. 활동보고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에 관하여 유기홍 의원과 강민정 의원에게 법안을 제출하여 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공문을 발송하였음
- ▷ 국교련에서 추천하는 교수의 의석을 마련해줄 것을 전달하였음

▷ 국공립대학의 교수, 대학기관은 국교련에 대한 관심 필요
교육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대학정책학회, 정책연구소 담보상태의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돌파구를 마련하였음

∴ 충북대학교 이성덕 교수회장 질의

- ① 국교련에서 교육위원회에 편입되는 사안 중요
- ② 국가적인 인정을 받는 형세가 아니기에 이전 상임의장은 법인단체를 구축하려 하였기에 이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자 함
- ③ 국교련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 제출시 개별 교섭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려면 국교련 상임위원장께서 ‘안’을 각 대학의 교수회에 보내어 공동서명을 받은 후 공동 의견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함.

< 답변 사항>

▷ 지금까지 국교련에서 법률안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만들어 각 대학교수회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전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대학 교수회에서도 대학본부를 통해 별도로 교육부로 발송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별 대학교수회에서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교육부와 해당 정부부서에는 각 대학 교수회 의견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함. 각 대학 교수회장님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였고, 국교련 집행부에서도 공문발송시 각 대학 교수회장님들의 서명을 연명으로 받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사교련은 법인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교련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상 진전된 사항은 없다는 의견에 대해

< 답변 사항> 미래통합당의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교련 입장을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발송하였으며, 면담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교원단체 인정**을 줄기차게 요청하였음.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시행령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음. 국교련은 교육부의 말을 믿고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어떤 교원단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협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달한 바 있음. 조만간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임.

Ⅲ. 보고 및 논의사항

보고사항 1. 국교조 경과보고(오홍식 상임회장)

- 회의자료 25쪽 참조 : 국교조 노동자 창립 1주년 총회 개최 및 한발대 지회 설립 등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음, 각 대학에서는 지회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람

논의사항 1. 학칙에 근거한 교수보직경비 지급 대상 검토 (강원대학교 이한수 회장)

- 27쪽 참조 : 2016년 강원대학교 감사결과, 평의원회 의장에게 보직 수행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 본부장, 부처장, 부분부장, 부원장, 부학장 보직 수행 경비 지급 부당에 대한 내용이 거론됨
- 향후 국립대학 설치령에 따른 보직 수행 경비를 명확히 정하고 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라는 감사처분서가 내려옴
- 강원대 전임회장의 경우 총장 임명직이 아니라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인 경우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총장이 임명하거나 선출하거나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본부에서는 교육부의 회신 및 상위 법령의 개정 이후 검토할 것으로 의논되어 학칙개정을 연기하고 있었음
- 이후 교육부는 직책수행경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이므로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직책수행경비 또는 특성업무경비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별표 15 지급대상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회신하였음
- 이에 강원대학교에서는 학칙에 의한 보직수행 교수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침을 수정할 것을 건의함
- 2020년 8월 6일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 예산집행 기본지침 개정(학칙에 따라 규정 외 직책을 확대할 수 있음)공문을 발송하였음
- 따라서 교육부의 법령 혹은 지침 등의 제한이 해제된 상태임
- 강원대학교 본부는 교육부 및 다른 대학의 상황을 파악한 후 경과보고 할 것을 고지함
- 강원대학교 교수회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이름으로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국립대 예산집행 기본지침 개정에 따라 학칙에 근거하여 직책이 포함된 의원들의 수당 지급에 관한 요구를 할 계획이나 회신이 어려운 경우 권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
- 이러한 문제들은 강원대학교 이외 다른 대학교들의 공통된 사항의 문제이므로 공동으로 연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 부경대학교 김두진 교수회장

- ① 국립학교 설치령 15조에 근거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의 보직에 관한 내용 중 제 5조, 6조에는 교수, 부교수가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② 총장, 부총장 등의 대학본부 조직에 관한 내용임. 따라서 국립학교 설치령에서는 부처장과 같은 직급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고, 조직의 ‘장’ 만 해당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부처장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하부조직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학칙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활용한 이후 각 대학의 학칙개정을 수정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여겨짐
- ▷ 법률적인 검토로 인하여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국교련 차원에서 각 대학에 공문을 작성하여 각 대학의 총장단에게 공식적인 요구를 할 것과 더불어 국교련 차원에서 연대하여 권익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권함

논의사항 2. 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관련 사항 (상임회장 제안 설명)

- 37- 46쪽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 79조에서는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80조 1항에서는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라고 정의함
-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하면서도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강등’ 징계가 배제됨

〈토의 내용〉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만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46쪽 징계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보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리기준이 ‘해임 혹은 파면’ 으로 명시되었기에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이 높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80조를 보면, ‘4조 2항에 따라서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 내용이 있음. 교육공무원에도 직급이 있는지 의문이 들며, 교원은 똑같은 직급이라고 여김

-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을 자체적으로 직급으로 보고 있으며, 여러 규정을 보았을 때 강등이라는 표현은 교수직급에 따라서 정교수, 조교수, 부교수 등이 해당 사항으로 보임.

- ▷ 정직 3개월, 6개월 또는 ‘강등’ 이라는 문구를 비고란에 넣는 것을 고려할 만함.
- ▷ 궁극적으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헌법소원을 하는 길이 가장 최선이라 여겨져 이해당사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함
- ▷ 국교련에서는 헌법소원 이전에 시행규칙령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삼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입안’ 을 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도 좋을 것이라 여겨짐
- ▷ 시행규칙령은 법령이 아니며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규칙임 또한 징계위원들이 징계를 할 때 징계기준을 벗어날 수 있음. 이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지며, 징계령은 단지 하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경우 당사자가 ‘교원소청’ 하는 것도 가능
- ▷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교육공무원징계령은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포함됨. 다만 형식에 있어 행정규칙이기에 징계위원회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징계위원들이 모두 법학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부령에 명확하게 음전운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음. 또한 ‘음주’ 나 ‘성’ 에 관한 것은 감경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어 소청을 하더라도 구제받을 여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
- ▷ 해결방안으로는 입법을 바꾸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내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현재 이해관계자들은 소송 및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상태임
- ▷ 국교련 차원에서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면, 어떠한 형태로든 소송이나 헌법소원심판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 ▷ 실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처음부터 중징계로 책정되면 경징계로 감경하기는 어려움이 뒤따름. 또한 징계위원회는 외부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이며 대부분 학교의 실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부담감이 있어 실제로 재량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 ‘성’, ‘음주’ 는 포상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으며, 징계 시 양형을 기준하한으로 내릴 수가 없음
- ▷ 따라서 국교련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있음
- ▷ 시행규칙 개정은 어려울 것 같지 않으며, 비고란에 특이조항을 삽입할 것을 권함
- ▷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대안까지 만들 것을 권함
- ▷ 교육부 관계자들은 교수들한테 호의적이지 않기에 입법청원 또는 헌법소원으로 가지 방향을 권함
- ▷ 국교련에서는 국교련의 입장이라는 취지로 ‘의결안’ 을 만들어서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
- ▷ 교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국교련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국교조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국교조의 역할도 있으나 국교련은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앞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국교련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기타사항 1. 교수신문 논설위원 추천 공문 회람 및 위원 추천

- 47쪽 참조 : 국교련에서 활동하는 위원들 중심의 교수신문 논설위원 추천 요청을 받았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
- 한명숙 공주교대 교수회장, 이기홍 전 강원대 교수회장, 안상준 안동대 교수회장, 김두진 부경대 교수회장 4인 추천을 받았음.
교수신문 편집국으로 공문 발송.

기타사항 2. 단과대학 교수회의 운영과 실제

- 1) 단과대학 교수회와 학장 선출 및 예산문제와 관련된 사항
- 2) 단과대학 교수들이 단과대학 교수회를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단순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 되어 있는지 다른 대학의 상황을 물음

<답변>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나 학칙으로 정해진 교수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수회 산하에 단과대학교수회가 있고, 그 역할과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대학의 상황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단과대학 학장 선출에 대해서는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대학본부에서 조사결과(당사자 공개)를 그대로 받아들여 면접을 통해 총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회의 사진>

